활동기구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(사)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(이하 '지부'라 한다.)의 정관 제30조1항에 의하여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활동 기본원칙) 활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한다.
 - 1. 지부의 정관과 규정, 규칙을 준수한다.
 - 2. 지부의 목적과 활동원칙에 따른다.
 - 3. 활동기구는 자발성, 다양성, 투명성, 인권(캠페인)지향성,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을 원칙으로 하여 활동하다.
 - 4. 국제앰네스티 전략계획과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.
- 제3조(활동기구의 종류) 활동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그룹
 - 2. 네트워크

제2장 그룹

- 제4조 (그룹의 설립요건) ① 설립목적은 지부의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.
 - ② 그룹 구성원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.
 - 1. 그룹 구성원은 지부의 운영회원(이하 '회원'이라 한다.)을 대상으로 한다.
 - 2. 그룹 설립 시 구성원은 지부의 목적과 활동원칙 및 각 그룹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5인이상의 운영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. 단, 그룹승인 후 대표를 포함한 임원 2인을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대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
 - ③ 그룹은 특정 인권주제나 지역, 대상, 또는 활동방법 등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구성할 수있다.
- **제5조 (그룹의 설립절차 및 숭인)** ① 그룹을 결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구비하여 사무처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한다.
 - 1. 그룹설립신청서 1부
 - 2. 회원명단 1부
 - ② 이사회의 승인 후 6개월의 준비모임 단계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.
 - 1. 활동보고서
 - 2. 그룹회칙
 - ③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정식그룹으로 인정된다.
 - ④ 승인여부는 서면으로 통보하며, 승인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제6조(그룹의 명칭사용) 그룹의 공식명칭은 숫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그룹의 특성이 명확한 경우, 숫자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.
- 제7조(그룹의 권리) 그룹은 자율적으로 활동의 내용을 정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갖는다. 또한 지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8조(그룹의 의무) 그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- 1. 그룹은 활동보고서, 변경 시 그룹회칙을 매년 정해진 시기에 사무처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2. 모든 그룹 구성원은 지부의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.
- 제9조 (그룹의 해산) 그룹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그 그룹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가 서명한 해산 결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자격상실) 그룹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앰네스티 규약 · 규칙 ·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 - 2. 그룹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
 - 3.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 3 장 네트워크

- 제11조 (네트워크의 설치) 네트워크는 지부의 활동단위로서 지부 사무처는 특정한 이슈나 주체 등에 따른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다. 네트워크는 캠페인사업에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주제나 대상, 또는 활동방법에 따라 설립된다.
- 제12조 (네트워크의 구성) ① 네트워크는 그 주제나 대상, 또는 활동방법에 동의하여 활동하고자하는 회원들과 지지자들, 담당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다. 필요에 따라 운영진을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네트워크는 주제별/국가별로 구성하며, 시기와 인자들 즉, 네트워크 운영의 역량투입 가능성에 기반 하여 구성 한다.
 - ③ 회원은 네트워크와 그룹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.
- 제13조 (네트워크의 운영)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한국지부의 캠페인사업에 의해 결정된다.
 - 1. 각 네트워크는 코디네이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 - 2. 네트워크의 지원 및 운영은 사무처의 담당자와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.
 - 3. 각 네트워크는 별도의 운영 안을 작성하여야 공개한다.
- 제14조 (네트워크의 의무) 네트워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활동을 보고한다.
- **제15조 (네트워크의 해체)** 앰네스티의 활동계획에 의해 네트워크를 해체할 시, 사무처는 해체예정 3개월전까지 구성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체사유에 대해 공개한다.

제4장 보칙

제 16 조 (규정의 개페)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페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0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22일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6 년 8월 20일 개정 시행한다.